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차오

2018. JAN + FEB



01/02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경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안녕하십니까? 무술년(戊戌年)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3월에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며, 5월에 들어선 새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적폐청산' 수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법에서 2017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치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움 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학생 및 직원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년인 2016년 사립대 법전원은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공립대 법전원은 등록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법전원생 6,000여 명 중 약 950명(15.8%)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법전원은 중산층 이하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된 장학금 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전체 학생의 80~90%가 전액 또는 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년에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42억 원을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확보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는 약 11.9% 증가한 4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판까지 존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결원보충제도가 지난 해 2월에 4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던 변호사시험을 부산, 대구 및 광주까지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회원과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법전원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법전원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법전원 현안의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도 법전원 가족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형규

신년사  
 戊戌年 2018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01 + 02



발행일 2018년 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원장
- 08 파워 인터뷰  
마포구청 법무팀장 조원의 변호사
- 12 언론 속 로스쿨
- 16 법조 윤리를 말하다  
송경훈 변호사
- 20 행복 로스쿨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홍경열 학생
- 23 BOOK
- 24 특별기고  
20대 국회 박범계 의원 보좌관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 28 로스쿨 핫이슈
- 32 로스쿨 특파원
- 40 로스쿨 생활백서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개최
- 44 SPECIAL REPORT
- 48 건강멘토링
- 50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4 문화가 산책
- 56 협의회 소식
- 58 OUT CAMPUS / LAW QUIZ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고(故) 최재희 선생은 서재에 칩거하면서 공부와 연구에만 몰두했으며, 고려대와 서울대 교수로 봉직하며 철학교육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최재희 선생의 저서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그의 학덕을 기리는 서우 철학상도 제정됐다. 선친인 최재희 선생의 뜻인 '학업의 길'을 이어받아, 38년 동안 법학계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원장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원장

# “담대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학문을 철저히 연마해야”



약 력

- 전 공 \_ 상법
- 학 력 \_ 중앙중 · 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법학박사

- 경 력 \_ 前 국립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 비교법학연구소장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前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前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Q. 원장님께서 38년이란 오랜 시간을 ‘법학 교수’라는 명함을 가지고 생활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A.** 본인은 1980년 3월에 전임교수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로 3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였는데 다음 달이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강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상사법학회 회장과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였으며, 대학원 교학처장, 대외협력본부장, 법학연구소장, 법과대학장 등의 보직도 차례로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법」, 「신상법총론」, 「신회사법요론」, 「상법판례강의」, 「상법학강의」, 「신상법사례연습」, 「상법사례연구」, 「신법학통론」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이런 책들은 학술연구서나 대학 강의 교재용으로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Q. 오는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A.** 최근에 「기업법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칼럼 · 에세이집을 출간하였는데 퇴임을 앞두고 이러한 책의 발간을 통하여 38년 동안의 교단생활을 회고하고, 나름대로 지나온 여정을 반추해 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저서들과는 달리 이 책은 제1부는 ‘기업법의 정립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상법학을 접하면서 느꼈던 상법의 나아갈 길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원고를 구성하였으며, 제2부는 ‘현안에 대한 법학 교수의 시각’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동안 본인이 신문 칼럼에 투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사적인 사안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개진하였고, 제3부는 ‘미네르바 단상-생활 속 수필-’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동안 썼던 생활 속 수필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 강의와 로스쿨 원장으로서 입시관리와 졸업사정, 평가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밖에도 최근 여러 시사적

우리 법학계는 법과대학이 로스쿨 체제로 바뀐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난관 끝에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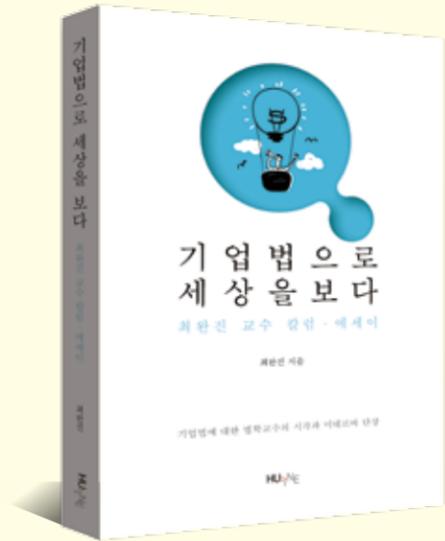
인 현안에 대한 신문 인터뷰와 생방송 토론, 기타 학회 관련 세미나 참석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처음 교단에 섰을 때와 퇴임을 앞둔 교단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무엇 인지요?**

**A.** 1979년 3월 처음 대학 강단에 선 이래 1980년 3월 국립 강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약관 27세로 어릴 가나 가장 젊은 교수로 소개되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어릴 가나 가장 원로교수로 대접을 받게 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1980년은 유신정권이 끝나고 신군부가 등장하여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학생과 교수를 어둠과 절망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대학 캠퍼스 한 가운데서 운동권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도 목도하였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번뇌하며 고뇌와 격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의 격동기에서 젊은 대학생의 열기와 정의감 덕분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심한 좌절감만 안겨 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업 환경, 지배구조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젊은이들이 이 암울한 현상을 조속히 탈피하여 국가 발전의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특히 우리 법학계는 법과대학이 로스쿨 체제로 바뀐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난관 끝에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외대에 대한 애착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A.**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법학과가 처음 설치된 후 제4회로 입학하



여 학창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외대 법학과에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젊은 교수들이 많이 계셨는데 법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설학과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외대로 진학하였습니다. 외대는 특히 고교평준화가 되기 전 명문고 학생들이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는 학교였고, 항상 서울대와 나란히 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여나갔습니다. 당시 외대는 매우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학교였고 서울 시내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라는 마크를 달고 외국인 교수가 탑승한 초록색 스쿨버스가 돌아다닐 때면 학생들과 시민들이 선망의 눈초리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외대는 외국어를 바탕으로 소양을 넓힌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것이 학교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글로벌대학으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법전원과 차별화되는 한국외대 법전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한국외대 법전원은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2009년에 개원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오면서 본인은 평소 강단에서의 단순한 이론 법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되고 살아 숨 쉬는 실용 법학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에 기초한 참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외대 법전원은 93개국 653여개 대학(기관) 및 다수의 국제기구와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국제지역전문 법조인 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유명 대학 및 로펌들과의 학술교류협정 및 실무교육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외대는 일찍이 외국어와 지역학에 특화된 대학으로 출발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통해 판사, 검사, 외교관, 공무원 등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은 올바른 가치관, 건전한 직업윤리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Q.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법률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법전원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법전원의 교육은 논리적, 체계적인 법학이론교육, 자주적·창의적 실무능력 배양, 건전한 법조윤리관 확립, 국제적 식견 제고라는 세부적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최고의 연구와 수확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에서 수학한 최고의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한국변호사로서 충분한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법은 물론 지역법, 국제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적 감각과 안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A.**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봄

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논란 끝에 2017년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했고,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의 일원화를 기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3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면 변호사의 자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그들이 목표한 대로 변호사가 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법조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법률 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실무수습 기관에서 열정페이(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받으며 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A.** 힘들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마땅히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저임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변호사들의 활동 공간을 좀 더 넓혀 주고 직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응한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단체, 학교법인이나 일반 사기업, 주민 자치단체 등에도 변호사를 최소 1인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변호사 취업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법학의 발전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주지하다시피 법학은 철학, 신학, 의학과 함께 4대 학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학은 인류 역사상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이고 법학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 원리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자 가장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정의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법을 향한 노력이고, 그것을 학문화 한 것이 법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법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과의 관련 속에서 법학의 과학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가는 모름지기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버리고, 정확한 법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법을 운용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봉사한다는 그 임무를 충실히 다 함으로써, 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지난해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sup>1)</sup>을 수상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분야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상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결코 지면 위를 통하여 습득하는 법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직접 적용되며 생동하는 법입니다. 또한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상법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끊임없이 진전하는 법이고 항상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 현상과 기업 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새로이 법학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학 교수로서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오면서 본인은 평소 강단에서의 단순한 이론 법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되고 살아 숨 쉬는 실용 법학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에 기초한 참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학도는 법의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문을 할 때에는 ‘사무치게’ 해야 합니다. 사무치게 공부한다는 것은 저의 선친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학문의 배경, 역사, 원리 등까지 철저히 공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일에 일희일비하며 경솔한 태도를 지양하고, 담대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학문을 철저히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창**

1) 최완진 원장은 상법학에 관한 33권의 저서(공저 포함) 및 약 70편의 학술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판례평석·사례연구 논문을 집필하는 등 한국 상사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제54회 '법의 날'(2017.4.25)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법조인의 진출 영역이 셀 수 없이 많아졌다. 기성 법조인들이 송무 시장에 국한된 진출을 했다면, 요즘에는 일반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다. 마포구청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익 변호사를 만나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로서의 희로애락을 들어보았다. editor. 박소희

### 마포구청 법무팀장 조원익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정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에서 많은 보람을 느껴”



내가 처리하는 안건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관 갈등이 적은 편이다. 또 행정청은 적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기관인데다가, 특별히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 같다.

#### Q. 학부 시절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이 꿈이었나?

A. 사실 입학 당시만 해도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문과 중에 법학과가 제일 좋은 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조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법학과에 진학한 것이다(웃음). 그래서인지 입학 후에는 학술 동아리나 댄스 동아리 활동같은 대외활동을 주로 했고, 법학에 대한 흥미도 갖지 못했다. 진지하게 연극이나 예술 활동 쪽으로 진로를 바꿔야 하나 고민도 했었다. 그러다 군입대를 하면서 방향성 없이 대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됐고, 예능에 별다른 끼가 없음을 확인한 후 법조인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복학한 후에는 취업 준비와 로스쿨 준비를 병행했는데, 장학금과 많은 혜택이 있는 로스쿨에 진학하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학을 결심했다.

#### Q.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인데, 로펌에서 근무했던 시절과 비교를 한다면?

A. 로펌에서 근무할 때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내면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순간이 많았다. 변호사라는 일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는 역할을 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마음속 고민을 늘 반복했던 것이 어려웠다. 일반 사기업의 사내변호사도 법률검토를 하겠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다보면 노사갈등이나 소비자과 갈등 국면에서 법률적 의견을 내는데 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공공기관은 그러한 갈등은 덜 하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처리하는 안건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관 갈등이 적은 편이다. 또 행정청은 적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기관인데다가, 특별히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 같다. 좋은 구청장님을 모신 덕도 크다(웃음). 덧붙여 로펌 소속 변호사에 비해서 업무의 자유도가 제한되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감당하는 게 주 역할이란 점에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 여러 가지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렇지만 송무 변호사가 사건이 일어난 후 수습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나의 경우에는 만들어가는 사전 단계에서 어떤 법률적인 선택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 Q. 마포구청 법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A. 마포구청 법무팀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의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또 각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안건을 처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무팀에서는 민사 행정 송무 및 행정심판 등 쟁송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등 전통적인 송무 관련 법률 업무와 조례 등 자치법규 심사와 규제개혁, 지방의회 협력업무, 마을변호사 등 지방의회와 대민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쟁송에 관련된 사항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법률자문은 구에서 추진하는 일

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생소했던 영역이 자치법규와 지방의회 협력업무였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 30년 정도 되었음에도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법적으로는 거의 독립된 정부처럼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법무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A.** 법무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 팀원분들이 각각의 담당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면, 실제 송무 문서 검토나, 처리 방향 검토는 나를 통해서 상급자에게 상신하게 된다. 별로 영특한 머리도 아닌데, 법무팀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웃음).

**Q.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할 것 같다.**

**A.** 아무래도 팀장은 간부 역할도 하다 보니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등 감당해야 할 역할도 많고, 팀원들 휴가, 각종 팀 예산, 세부계획처럼 챙겨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법무팀원분들이 대개 5~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로 연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경험도 풍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통 부서에 배치되면 3년 정도 팀에 배속되는데 법무팀에서 1년 정도 경험한 직원분들은 당장 로펌에서 근무해도 될 정도로 송무에 숙달되어 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법리검토나 증거 선별과 같은 작업은 내가 팀장으로서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구청 전체에서 변호사는 나 한 명뿐이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Q. 흔히들 공무원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근무와 칼퇴근을 꼽는다. 마포구청 법무팀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A.** 지자체마다 변호사를 채용한 형태가 다르다. 나의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인데, 과거에는 계

약직 공무원이라고 했던 형태이다. 그래서 적어도 5년 동안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열심히 배울 기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 마음만 먹으면 칼퇴근을 할 수는 있지만, 요즘 마포구에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로펌에 있을 때보다는 낫다(웃음). 마포구가 아현 뉴타운 사업 완성이로 인구도 많아지고 관광명소(월드컵공원, 홍대, 망원)나 업무지구(공덕)가 확대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송무나 자문에서 일이 많아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좋겠다.

**Q. 근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A.** 내가 마포구청에 오기 전에는 1년에 50건 내외의 법률자문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5건 내외로 줄었다. 정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물으실 때가 많은데, 개중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수정되기도 하고, 보류·보완되기도 한다. 그대로 추진하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지난 11월 마포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조례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이처럼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프로그래밍할 때 법률적인 사항을 서포터하면서 차근차근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뿌듯하다.

행정청이 적법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는 형사법 이전에 행정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변호사 채용과 대우에 대해서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 광역·기초 지방자치 단체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과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만 해도 40명 가까이 되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고, 내가 들어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SNS 대화창에도 10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대우면에서는 일반 로펌이나 사기업 사내변호사보다 박한 게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에 취업했다면 그 부분은 일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급여보다도 개인 바램으로는 최소한 5급 사무관 이상 대우로 정착되면 좋겠다.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도 그에 걸맞는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사결정구조에서 무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님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직급별로 정원이 할당되어 있고, 특히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5급 자리 확보가 정말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우를 떠나서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적법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는 형사법 이전에 행정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변호사 채용과 대우에 대해서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가?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알려 달라.**

**A.**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업무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좀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업무를 그 때 그 때 처리하고 넘어가버려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향후 1~2년 동안은 업무를 메뉴얼화하고 다소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세워갈까 한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법무행정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 법무팀이 소송교육을 진행하는데, 막상 소송교육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경우도 많고, 부서이동으로 담당자들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야 하는 것도 많다. 자치법규 입안이나 규제개혁과 같은 영역은 일반 송무 영역과 달라서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는 법제처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대로만 진행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오류를 쉽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직급 승진도 안 되고 정년이 보장된 직무도 아

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 다만 바라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의 폭을 넓혀서 '법무담당관'자리를 만들고, 마포구의 법무행정의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 **창**

**조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들어가기 꿀팁!**

**A.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

로스쿨에서는 행정법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법은 매우 중요한 법이다. 지방자치법, 특히 자치법규에 관련된 사항을 깊이 이해해 두어야 한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헌법의 통치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니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다. 또 소송절차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서류나 증거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싸야하는지에 대해서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의 현안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든가 최대 현안 사업, 구의 슬로건 등에 대해서 파악해 놓고 있으면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B. 채용 정보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나?**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는 대한변호사회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올라오지 않는다.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그곳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 모집공고를 수시로 체크하거나, 총무과 인사팀에 연락해서 향후 변호사를 뽑을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C. 공공기관에서 법조인으로서 뜻을 펼치고 싶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다.**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급여만 놓고 보자면 공공기관에 큰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송무나 사기업 변호사가 다루지 못하는 법률영역을 다루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더불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중시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적인 측면도 좋다. 그리고 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역할에 따라서 팀원과의 소통과 같은 리더십도 필요하다.

지난 12월 대한민국 청년채널 브릿지TV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조명했다. 30여 년간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살아온 이형규 이사장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자. editor. 박소희

## 꿈 꾸고 도전하라 두드림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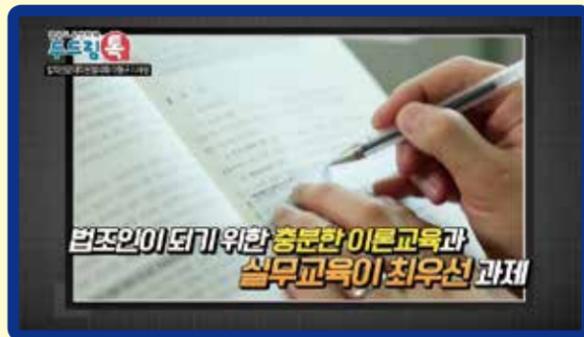
### 이형규 이사장

#### 약 력

-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現 독일 Goettingen대학교 한국동문회장
- 前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법조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최우선 과제"



Q. 사법시험 폐지로 로스쿨이 법조계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는데요. 로스쿨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이제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법이론과 법적 실무를 충실히 가르치고, 실무연수를 통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본에 충실한 자세와 편견 없는 마인드가 필수"



Q.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편견이 적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지요. 법의 정의에 대해 말할 때에는 종종 '정의의 여신'을 이야기 합니다.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 천칭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천칭 저울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칼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조인이 되어야 합니다.

##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Q. 로스쿨의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A. 2016년에 로스쿨 원장님들이 모여서 로스쿨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로스쿨은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사립대학 로스쿨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15%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도 전체 학생의 80~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액 또는 부분적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Q. 법학을 전공해야만 로스쿨에 갈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학계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성적 그리고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잘 하면, 어느 전공을 했든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법조인이 된 제자, 자랑스러워"



의실에서 강의를 들은 후, 한양대 법전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자마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제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A. 저희 한양대 법전원에서 공부한 고도근씨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학생은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칠판에 쓰는 것을 읽을 수 없고, 특수장비 없이는 눈앞의 책도 읽을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강

## "로스쿨 졸업 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와 미래"

Q.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A.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인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송무(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송무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는 사내변호사,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 대규모 기업에는 준법지원인 등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할 직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변호사로서 송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진로가 있는 것이지요.



##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

Q. 좌우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A. 진인사대천명, 즉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춘음을 아껴 써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짧은 시간도 아껴 쓰고,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취침시간, 기상시간, 식사시간을 동일하게 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학교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두드림 특 이형규 이사장 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조윤리를 말한다 ①

## 법조윤리시험의 동향과 문제분석

지난해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였습니다. 제7회와 제6회에 각각 98%, 96%의 합격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합격률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법무부 그리고 출제위원들의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70점이라는 절대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이기는 하나,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법조삼륜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특히, 변호사 징계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에서 기본적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험생들의 단일한 학습방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어야 3-4일 남짓 수험서를 눈에만 바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를 법무부나 출제위원들이 보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0-80%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나 출제위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험을 출제하는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기에,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로서는 이번 법조윤리시험과 같은 난이도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판례의 비중을 높여 정답 시비를 줄인 점, 「변호사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출제하여 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려고 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사법시험 시절부터 변호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법조인을 선발·양성하는 시험이 판례 암기시험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으나,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판례만큼 확실한 재료가 되는 것이 또 없기에, 법조윤리시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몇몇 문항을 실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송경훈 변호사

-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 2014-2016  
법무부 법조인력과  
공익법무관
- 2016-2017  
법무법인(유) 한결  
소속변호사
- 2017-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 제8회 법조윤리시험(1책형) 문 2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와 구상금청구의 항소사건만으로 수임 범위를 한정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승소간주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착수금은 계약 당일 변호사 甲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착수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성공보수는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해 항소사건의 판결 선고 시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당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므로 甲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위 ㄷ.은 틀린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성공보수도 환송 후 항소심이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출제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에 선고된 아래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는 위 ㄷ.과 달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 청구가 배척되었는데, 아래 판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어서 출제했기에 정오를 가리기 쉽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입니다.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성공보수금】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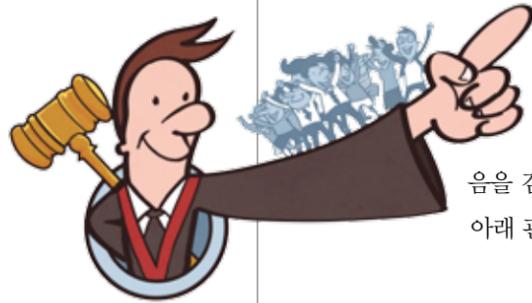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70-80%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나 출제위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험을 출제하는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기에,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로서는 이번 법조윤리시험과 같은 난이도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문 30. ③, ④ 지문은 판례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1책형) 문 30.**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③, ④은 모두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변리사, 세무사 등과 변호사 직종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나, 기출 지문이 다시 출제되어 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한번쯤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중략)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세무사등록거부취소처분】**

구 세무사법(2013.1.1.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담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처럼 판례 출제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에 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로서는 관련규정을 익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판례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윤리]는 법조윤리시험을 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주요 대상으로 집필되었다. 법조윤리 관련규정은 직접 찾아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본문 내에 법규의 내용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각주의 분량이 상당부분 증가하였고, 법조윤리시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내용도 다수 보강되었다.

저 자 : 송경훈 변호사  
출판사 : 로스타트

로스쿨 학생들의 일과는 대개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난다. A to Z 까지가 모두 공부인 셈. 하지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경열 학생의 일과에는 밴드 활동이나 야구부 활동 등 학업 이외의 것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그가 로스쿨 3년을 더 촘촘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다. editor 박소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홍경열 학생

##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법조인이 목표”

**Q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시절을 보냈는데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학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법학부 진학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지리학 자체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전공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막상 대학에 진학해 보니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흥미가 생겨, 전공과는 관계없이 잡학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철학, 경제학, 역사 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토론회나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Q 졸업 후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독특한 이력이네요!**

**A** 졸업 후 학사장교로 해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차출되는 바람에 김포 해병2사단에서 대부분의 군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공지합동작전에서 폭격 등을 유도하는 전방항공통제관(해군 최초로 공군에서 자격취득을 했습니다)으로 근무했습니다. 3년 해군 복무 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약 2년간 준비했지만, 2차 시험에 낙방해서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경험을 살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보험영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험영업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어서 망설였지만, 보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영업에 대한 도전도 해볼 겸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상품을 연구해서 정직하게 영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개월 연속 지점실적 1등이라든지, 지역단 실적 1등과 같은 소위 ‘보험왕’ 타이틀도 얻었습니다(웃음). 힘든 시간이었지만 글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영업 현장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보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속과 세금에 대해 더 궁금해져 공부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회계사 수험시절의 지식이 합해지니 어느 정도 영업을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

은 높았고, 제가 가진 생각과 비전은 펴볼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보다 먼저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된 대학 선배와 동기들이 로스쿨 진학을 권유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막연하게 꿈꾸던 법조인에 대한 욕심이 생겨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A**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아주 만족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생계문제를 벗어나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 인식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한때 금수저니 음서제니 하고 비난을 들었던 로스쿨에서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는 고시의 영역에 속하는 공부를 했던 때와 비교하면 로스쿨 제도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고시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는 공인

회계사 수험이지만 관련된 학원비, 책값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군을 전역할 때 3년간 모은 적금과 어머니와 동생의 후원으로 저는 겨우겨우 2년의 수험기간을 채울 수 있었고, 제가 합격의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했을 때 1년의 수험을 더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한 이유도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그에 비해 로스쿨은 학비의 부담을 장학금으로 덜어주었고, 기숙사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줄어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고시공부 시절과는 비교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 없는 저에게 현실적인 사례들을 법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공부였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Q 부산대학교 로스쿨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우리 부산대 로스쿨 7기 동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웃음). 다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수험생활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교수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법학공부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특히나 저처럼 비법대생인 학생들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는 모습이었고, 단순히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Q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3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A** 사실 로스쿨에 진학할 때는 법학 공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커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학해보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성장해나가는 많은 시간들 역시 공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에 나가

대학교 때 취미로 치던 기타를 더 쳐보고 싶은 생각에 부산대 음악동아리 프로뮤지카에 속한 밴드 전원합의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학업과 병행하며 야구부의 감독도 했었고, 3번의 전국로스쿨 야구대회 참가, 4회의 밴드공연을 했습니다.



서 법조계에 함께 일할 동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간관계와 평판 또한 공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을 할 생각으로 부산대 야구부 에스토펠에 가입하였고, 대학교 때 취미로 치던 기타를 더 쳐보고 싶은 생각에 부산대 음악동아리 프로뮤지카에 속한 밴드 전원합의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학업과 병행하며 야구부의 감독도 했었고, 3번의 전국로스쿨 야구대회(매년 여름 개최) 참가, 4회의 밴드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저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적이 없고,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학교생활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선배들의 조언과 전해주시는 학습 자료들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어려운 질문이네요(웃음). 저는 ‘올바른’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올바른’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저의 대학생활이었고, 지금까지 제 삶을 살면서 가장 고민하고 갈구하던 해답이 그 ‘올바르다’의 의미였습니다.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결국 ‘올바른’ 법조인이 저의 목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면 가난하고 힘들다,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여기지만 그런 사회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올바른 것이 꼭 힘든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면서도 충분히 성공하고 힘들지 않게 살며, 타인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아주 조금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욕심을 위해 한발을 내딛는 것으로 많은 것이 변하니깐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온 이창준이라는 배역의 마지막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는 제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로는 제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보험소송 영역이나 보험과 세금제도를 활용한 상속증여 플랜자문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운용 쪽으로 일하고 싶긴 합니다만 그건 방법의 문제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어떤 분야의 변호사가 되든 ‘올바른’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Q 얼마 후면 로스쿨 10기 후배들이 입학하는데요. 로스쿨에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준다면요?**

**A**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부하기 전에 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설정해야 합니다. 의외로 변호사 시험의 과목과 시험방법, 범위를 2~3학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무슨 과목을 어떤 범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지 알아야 제대로 시험 준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채워지는 영역과 채

워지지 않는 영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맞춰 수강신청 및 스터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보다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다는 점, 1학년 때는 문제풀이 보다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것을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된다는 점 등입니다. 아, 그리고 스터디 꼭 하세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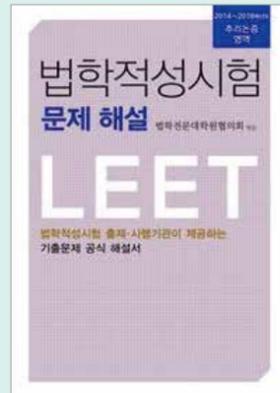
**홍경일 학생이 알려주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노하우!**

**▲ 평소에도 논리적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제 경우에는 원래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히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의 경우 특별히 대비를 하지 않았고, 기출문제를 3회 정도 풀어보고 유형을 파악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면접도 스테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에 어떤 문제를 보면 ‘왜 그럴까?’,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쳐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걸까?’, 또 ‘논리적 허점은 없는가’ 등을 고민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이 습관들이 결국 리트 점수나 면접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로스쿨 진학 후 공부할 때에도 큰 힘이 되니까 가능하면 ‘습관’처럼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러 번의 첨삭과 자신감의 내적근거 키우기**  
자기소개서는 앞서 진학한 대학 선배나 동기들의 도움을 가능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의 첨삭도 부탁해서 글의 논리적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닌,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자신감을 기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신감의 내적근거를 기르는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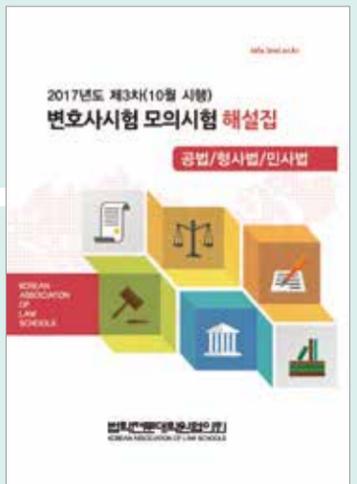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이 제공하는  
2014~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공식 해설서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집**

법학적성시험 최신 5회분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담은 책으로, 실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출제근거자료(문항해설 포함)’에 기반을 두고 집필되었다.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기획하였다.

**저 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가 격** : 19,800원  
**판매처** : 온·오프라인 서점

**2017년도 제3차(10월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률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법전원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해설집이다.

**가 격** : 10,000원 / 택배비 4,000원 부과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 청**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 연락처 : 02-888-2031  
■ 이메일 : lawschool@leet.or.kr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3-018484 (예금주 : 삼영문화사 이준규)

**신청방법**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교재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송부  
2. 입금계좌로 입금 (단, 입금자명은 주문자명과 동일해야함)



## 식물국회? 동물국회?

박범계 의원 보좌관 (20대 국회)  
- 변호사시험 2회 - 전 박민수·유성엽 의원 비서관(제19대 국회)  
배수진 변호사

\* 편집일정상 '17년, 12월에 작성된 원고입니다.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과 그 이튿날인 3일까지 쏟아져 나온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사 제목만 보아도 얼마나 지지부진한 협상이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429조 슈퍼예산 통과될까’, ‘교착 상태 예산안 협상..공무원 증원·최저임금이 최대걸림돌’, ‘여야, 쟁점 예산 막판 진통..각당 의총후 오후 6시 협상 재개’, ‘예산안’ 여야 오늘 합의하면 내일 의결해도 법정시한 준수’, ‘여야, 예산안 최종 담판 재개..법정 처리 시한 넘길 듯’, ‘예산안 사실상 법정시한 넘길듯..쟁점 외 증액심사도 하세월’, ‘법정시한 넘긴 예산...여야 추가논의 나섰지만 빈손 종료’

결국 국회는 예년과 달리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진통도 이런 진통이 없다. 작년(2016년)에는 본회의 개의 시각이 여러 번 연기되는 가운데 새벽 3시가 넘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올해도 작년처럼 기약 없는 대기 끝에 문득 들려올 ‘예산안 극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혹은 아침 퇴근을 예상하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일러놓고 출근했던 터였다. 그런데 일찌감치 합의 불발 소식이 전해지며,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열었던 본회의는 부수법안 몇 건만 처리하고 밤 10시가 되기도 전에 상급계 끝나버리고 말았다. 언제 본회의가 열리려나 지루해 하며 졸음방지용 커피만 홀짝거리던 작년과 사뭇 달랐다. 예산안 통과는 물 건너갔지만 이른 퇴근을 기뻐해야 할지...



법정시한을 넘긴 하루 이들 사이에는 이번 예산국회는 국회법(제85조의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등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에 정한 법정시한까지 어기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이라며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식물국회’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일한 지난 몇 년 간을 뒤돌아보면, 매우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식물국회라는 말이 국회를 참 잘 묘사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생산해 내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은 만날 싸움질에 내로남불만 외쳐댈 뿐 법안, 예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없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는 것도 모자라 종종 밤샘마저 하는 보좌진으로서 하기에는 속상하고, 듣기에도 야속한 말이지만 도대체 국회라는 곳은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국회는 진짜 아무 일도 안하는 ‘식물’이기만 한 것일까?

예산안으로 돌아가 보자. 비록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착상태 예산안 협상’이라는 기사 제목에서는 어찌되었건 협상을 해왔음을 읽을 수 있고, ‘쟁점 예산 막판 진통’에서는 무쟁점 예산은 큰 진통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각당은 예산안을 두고 의총(의원총회)도 열었고, 원내대표들은 최종 담판을 짓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이후 추가논의까지 했다. 무언가 하기는 한 모양이다.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 결판을 내지 못한 그런 상황

‘식물국회’라는 말보다는 갈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든다. 물론 국민들이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세련된 방식으로 으르렁댈 수 있는 국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아쉽다.

이었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은 결국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밤 12시 33분에 가결되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식물국회’라는 표현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예산안 통과까지 오갔을 수많은 논의, 협상, 흐름 등은 ‘식물’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물’처럼 으르렁 대느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동물국회’가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2018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회가 ‘식물’인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국회가 ‘동물’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쯤 되면 국회는 식물인지, 동물인지 아리송해진다.

정치란 무엇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정치에 관한 정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두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매우 우아하게 표현했다. 정치하면 떠오르는 갈등, 소란은 어디 갔나 싶지만 이만큼 정치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정된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극단의 갈등은 과거에는 쉽게 그러했듯이 전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국회라는 장(場)에서 치열히 싸워 해소(갈등을 말끔하게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 순화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다)되게끔 한다. 제도(권위) 내에서만 싸움이 허락되는 셈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고 허용되는 싸움이다. 그리고 국회는 합법적인 싸움터, 치열한 갈등의 장인 셈이다. 치열해야, 치열할수록

갈등이 순화될 기회도 많아진다. 식물이나 동물이나로 말하자면 동물적이다.

이렇듯 정치의 본질은 갈등인데 우리 사회(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니겠지만)에 만연해 있는 정치 혐오는 그 본질을 깜빡 잊은 듯하다. 대개 정치 혐오는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고 국가의 미래 따윈 관심이 없다,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류(類)로 정치인 집단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에는 갈등이란 없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는 갈등 혐오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갈등이 순화되는 과정을 담아낼 수 없는 ‘식물국회’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다.

변호사인데 변호사일은 안하고 왜 국회에서 일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질문하는 쪽은 대개 사람들이 그렇듯이 ‘변호사일=송무’라고 생각하는 것일 터다. 법안을 기획하고 발의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냐고 틀에 박힌 답을 하곤 한다. 송무변호사나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갈등의 최전선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재판과정도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정치해 있는 것 같지만 기일이 반복 될수록 결론을 향해 응축되어 가는 에너지가 있듯, 국회에서의 협상과정도 지난하지만 결국은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언제 어디서나 갈등을 다룰 수밖에 없는 법조인이기 때문인지 ‘식물국회’라는 말보다는 갈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든다. 물론 국민들이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세련된 방식으로 으르렁댈 수 있는 국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갈등을 순화시키는 정치의 순기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정치와 국회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나아가 예비법조인을 포함한 법조인들께는 국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



## 변호사의 덕목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절 까마득한 선배 변호사님께 질문을 던진 경험이 있다.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선배 변호사님은 일말의 고민 없이 변호사의 덕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세 가지 덕목이란, 첫째는 ‘지식’이요, 둘째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며, 셋째는 ‘정의에 대한 신념’이다.

첫 번째 덕목이 ‘지식’인 이유는, 열정과 신념만으로는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가치는 지식에서 비롯한다. 부족한 지식으로는 타인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잘못된 지식이 변호사라는 권위에 기대어 전달될 경우 곡학아세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올바른 지식의 습득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식의 습득’은 시험 문제를 맞추는 능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 로스쿨 재학기간 동안 가장 큰 목표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법률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되거나 보충되며, 한 해에도 수 십 개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재학 중에 학습한 법률 역시 전체 법률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끊임없이 지식의 전달을 요구받으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는 것은 곡학아세의 주인공이 되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 덕목이 ‘사람에 대한 열정’인 이유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끊임없이 사람에게 대한 실망과 의심을 반복

하게 되는데, ‘사람에 대한 열정’ 없이는 건강한 정신으로 변호사 업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의뢰인 인생의 행복한 장면에 등장하기 보다는 불행한 장면에 등장하는 존재다. 인생의 불행한 장면에는 즐거운 자보다 분노한 자가 많고, 웃는 자보다는 우는 자가 많으며, 정직한 자보다는 거짓된 자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는 일생동안 분노한 자, 우는 자,

거짓된 자와 함께 살아가며,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대한 실망과 의심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는 결코 사람에게 대한 희망을 잃으면 안된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분쟁과 갈등의 시기를 견뎌내면, 분노한 자 보다는 즐거운 자가 많고, 우는 자보다는 웃는 자가 많으며, 거짓된 자보다는 정직한 자가 많은 ‘인생의 행복한 장면’을 맞이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간에 대한 실망과 의심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더라도, 변호사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이 어둠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명하되, 사람에게 대한 믿음과 열정을 놓아서는 안된다.

세 번째 덕목이 ‘정의에 대한 신념’인 이유는, 변호사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정의에 대한 신념’ 없이는 삶의 방향성을 잃은 채 말초적 가치의 유희 속에서 부유(浮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다양한 의뢰인과 인생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분쟁과 갈등의 시기를 견뎌내면,  
분노한 자 보다는 즐거운 자가 많고,  
우는 자보다는 웃는 자가 많으며,  
거짓된 자보다는 정직한 자가  
많은 ‘인생의 행복한 장면’을 맞이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가 살아온 과정, 가치관, 신념, 성공의 비결, 실패의 이유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타인과 가치관을 공유하다보면 문득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문을 던지게 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의뢰인의 논리를 차용하여 의뢰인을 위한 항변을 개진하다보면 이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은 더욱 커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신념이 필요하리라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에 대한 신념’이라는 점에 다름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정의(definition)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 적어도 각자가 가진 정의의 관념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둥이라는 점에 다름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프로페셔널이라는 이유로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비록 양심에 반하는 일을 수행하더라도 정의에 대한 신념을 버려서는 안된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모두 충분히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무릇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는 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나, 나침반 없이 걸어가는 자는 그 끝이 어디인지 장담할 수 없다. 인생의 나침반은 각자가 오랜 고민 끝에 가슴 깊이 새겨 넣은 각자의 인생철학이라 할 것인바, 철학에 대한 고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부디 로스쿨에 재학 중인 모든 예비 법조인들이 올바른 인생철학을 가짐으로써 현혹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

● 정현석변호사는 학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후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과의 운명적 만남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6년째 의료소송 및 의료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북대 로스쿨 졸업생들, 후배사랑 발전기금 1,400만원 쾌척

지난 11월 27일(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와 4기 졸업생 일동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배사랑 발전기금으로 1,412만원을 전달했다. 법전문 졸업생들이 후배를 위한 기금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작년 7월 1,2기 졸업생들이 1,200만원을 쾌척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 법전문 권오걸 원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형성된 발전기금만큼 전통으로 만들 예정이며, 선배들이 지원한 발전기금은 변호사시험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광대 로스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봉사 진행

지난 11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는 익산시 지역축제인 '제14회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에 참여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법전문 리걸클리닉 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근 지역 축제에 참여해 상담 부스를 설치해놓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분쟁해결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법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에 입법 컨설팅 받기로 해

강원 춘천시가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 법학 인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2018년부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법 컨설팅을 받는다. 현재 춘천시는 강원대 로스쿨 지역 출신 재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전문지식으로 지역에 기여한다는 취지 하에 입법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연중 신규 입법안을 위주로 상위법령 위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법령상 근거유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 자치법규 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방침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1차로 시의 입법 초안을 검토하면 교수가 다시 확인해 그 결과를 시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사출처: 뉴스1 2017-11-15



### 서울교육청-한국법조인협회 학생맞춤형 법 교육 위한 MOU 체결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1월 27일(월) 종로구 교육청에서 법·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약 3,000명으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서울시 교육청과 한법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대상 법률 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놀이로 배우는 법률교육', '이야기로 들려주는 헌법교육'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생들의 법 지식 습득과 학생 노동인권 보호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아주대 법전원팀, 서강대 법전원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1월 9일(목)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이슈 등에 대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의 책임관계'라는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로 원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로젝트팀, 우수상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알바트로스팀이 수상하였다.



## 명예를 걸었다!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The 9th Korea Moot Court Competition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이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며, 각 학교의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대회로 꼽힌다. 지난 1월 3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본선 및 결선이 치러졌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의 분야에서 예선을 거친 36개팀이 치열한 본선 경연을 펼쳤고, 12개의 팀만이 결선에 올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상상을 하고 있다. / 민사 우승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 / 형사 우승팀 충북대 법전원 학생들과 이재목 원장님(사진출처:법률신문)

결선에 오른 12개의 팀 중에서 가인상의 영예를 얻은 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민사부문)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형사부문)이다. 수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상장 외에 팀 트로피와 팀 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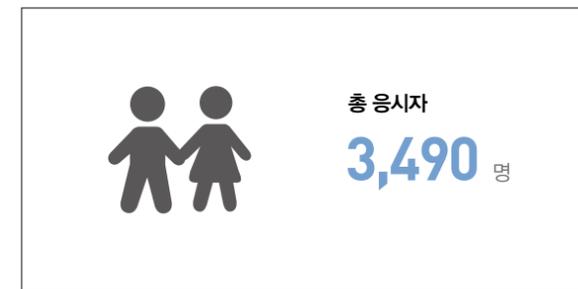
순위	상명	수상팀(수상자)
1위	가인상	[민사부문] 서울대(백대열, 송화권, 이하은) [형사부문] 충북대(유동열, 임영빈, 이정용)
2위	대한변호사협회장상(민사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형사팀)	[민사부문] 고려대(김예지, 이규찬, 성현창) [형사부문] 인하대(박동엽, 이현희, 김고운)
3위	법률신문 사장상	[민사부문] 충남대(전항록, 김보희, 윤수진) [형사부문] 연세대(심다은, 우가현, 차용면)
단체부문	자유상	서울대 법전원
	평등상	인하대 법전원
	정의상	중앙대 법전원
개인 최우수상(MVP)		[민사부문] 백대열(서울대) [형사부문] 이현희(인하대)

## 결전의 그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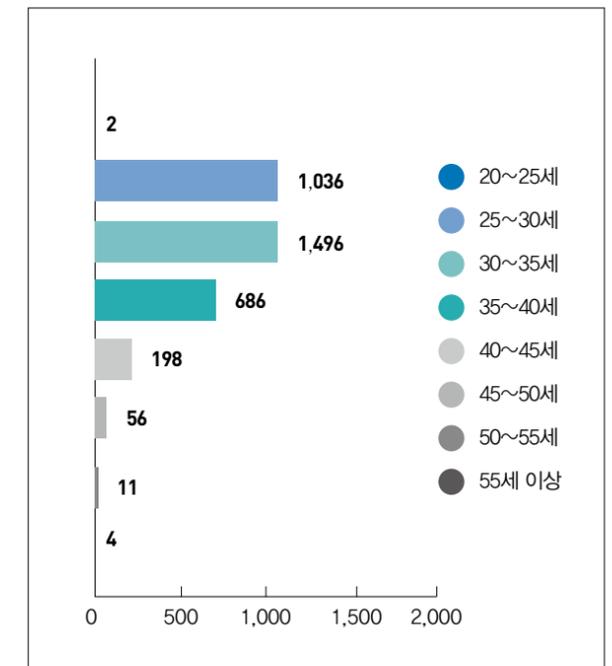
지난 1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총 4일간(11일: 휴식일 제외),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3,490명이 지원했으며, 서울 권역(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과 충청 권역(충남대) 5개 대학에서 시험이 실시됐다.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 ※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 연령별 출원 현황



충남대 시험장을 찾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변호사시험 실시 첫째날인 1월 9일(화), 충남대학교 고사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9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충남대 고사장의 수용인원을 200명 늘리기로 했으며,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남대학교 고사장의 경우 총 1,195명의 응시자가 몰렸다. 특히 이날 시험장에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핫팩과 간식 등을 준비해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됐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7일(금)로 예정되어 있다.

# 일본 추오대학교 여름 프로그램 후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고은조



방학이라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추오대 로스쿨 여름 프로그램과 같은 해외법조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적 시각은 물론 향후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추오대 로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계기

해외 유학 경험 없는 법학과 학생이었던 저는 카투사로서의 군 복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느꼈고 다른 문화, 사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률시장도 더 이상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법조인도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전부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학업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름 방학을 활용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실무수습 등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교내 설명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및 중국의 현지 로펌에서의 실무수습 및 중국 대학교 연수프로그램 등도 있었지만, 평소 우리가 계수한 일본 법제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Introduction to Japanese law in English'를 주제로 한 일본 추오대학교 로스쿨 여름 프로그램(2017 CLS Summer Program)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2. 수업 - 비교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느낀 시간

201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일본 도쿄에 위치한 추오대 로스쿨에서 주관한 '2017 CLS Summer Program'에 다녀왔습니다. 'Introduction to Japanese law in English'라는 타이틀처럼 강의는 영

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오대 로스쿨 소속 일본인 교수님들이 강의를 맡아주셨으며 진행된 5일 동안 매일 강사는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는 스위스, 포르투갈, 홍콩,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법대생, 로스쿨생 및 변호사 등 15명 내외의 참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 인원 규모는 매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강의는 "헌법관점에서 본 일본 법률 체계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일본법의 연혁, 난민법, 사회보장법,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과 각국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토론하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법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셨던 사토 교수님이 첫날 "헌법관점에서 본 일본 법률 체계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 특히 일본의 와(和)문화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은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 그리고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개방이 되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내부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와문화가 발전하였고 이러한 문화가 법적 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유럽의 법을 계수하면서도 변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법의 제정과정도 흥미로웠는데, 특히 초기 일본 법률제정자들 중 프랑스 유학파가 많았음에도 독일법 중심으로 법률을 계수, 제정하게 되어서 규정간의 혼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법을 계수하면서 우리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갖게 된 우리



수업시간

나라 법 규정이 생각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난민법에 대한 강의시간 중 병역을 거부하고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한국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그 사례를 알고 있었고 또 한국의 징병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와 유죄판결로 일관하는 한국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셔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종전과는 다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최근 상황을 설명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일본법에 대해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 상황 등을 소개하고 또 다른 나라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하고 또 그들의 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학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듣고, 한번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3. 오후 프로그램 - '베이커 앤 맥켄지' '에도 뮤지엄'과 '마사시'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고 수업 일정을 마친 오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세계적 로펌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 견학, 도쿄 지방법원 견학, 에도 박물관 관람을 오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오후 프로그램 대신에 환영 점심 식사와 송별회(farewell party)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참가자들이 모여 학교 측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유로이 대화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날 점심 식사 후에는 추오대 로스쿨생의 현지인 가이드를 마카오에서 온 법대생과 함께 받으며 메이저 친구, 하라주쿠, 도쿄타워 등 도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4위를 차지한 영국의 법률시장 전문기관인 아크리타스(Acritas)가 발표한 올해 '아태 로펌 브랜드 인지도(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 도쿄법인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에 있어서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던 보안 절차가 강렬한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사무실은 도쿄 중심의 굉장한 고층 건물에 위치하여 건물 내에 전망대와 같은 휴게 공간이 존재하였는데, 그곳에서 본 도쿄 전망은 전 날 도쿄타워에서 보았던 전망 못지않게 훌륭하였습니다. 전망 관람 후에는 회의실에서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 파트너 변호사이자 추오대 로스쿨 겸임교수님의 강의 같은 회사 소개를 한 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법조시장도 국내시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는 넓게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견학 시간을 통해 앞으로 법조시장이 개방된다면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와 같은 로펌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법원 견학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은 도쿄 에도 박물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담당자이신 사토 교수님의 가이드를 직접 들으며 관람을 하니 더욱 유익하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박물관 안에는 내부



에도 뮤지엄

구역을 시대에 맞게 나눠 조성하였는데 흥미로운 전시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견학 후 참여한 뒤풀이 모임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사토교수님이 예약한 스모경기장 컨셉의 식당에서 간단한 주류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말고기인 ‘마사시’와 고래고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소고기인 육회는 보기 드문 반면에 ‘마사시’는 상대적으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에서 과거에는 육회를 즐겼지만, 육회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파동이 있고 난 후에는 소고기는 생으로 잘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사토교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람부터 뒤풀이까지 일본의 문화를 가장 많이 체험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4. 기타 추오대 로스쿨 프로그램 관련 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 추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교류가 있어 저는 교내의 공고를 통해 지원하였지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추오대학교 로스쿨에 직접 지원하여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지원은 5월말에 하였고 지원서 작성은 영문으로 하였습니다. 숙소 및 비행기 편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가비는 3만 엔(円)이며, 오후 프로그램의 입장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추오대학교 본 캠퍼스가 아닌 일본 도쿄 히토츠바시(hitotsubashi) 역 근처 로스쿨이 있는 ‘이치가야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근처에 신주쿠역도 가깝습니다. 일과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 프로그램의 경우 2시부

터 진행 됩니다. 오후 프로그램까지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5시 쯤 돼서야 일정이 끝나므로 생각했던 것 보다 관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여행의 목적도 같이 있다면 프로그램 전후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 글을 맺으며

로스쿨 3년은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하는 현실적인 학업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연수, 실무수습 등은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학이라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추오대 로스쿨 여름 프로그램과 같은 해외법조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적 시각은 물론 향후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여가시간에 관광도 할 수 있어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다음 방학에는 해외로 실무수습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추오대 로스쿨의 여름 프로그램의 장점을 꼽자면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접하기 흔치않은 일본법에 대해 일본 로스쿨 교수님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한편으로는 같지만 또 다른 외국 로스쿨, 법대생 등의 참가자들과의 교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에 주어지는 관광과 휴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해외법조연구 프로그램 내지 실무수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 충남대 로스쿨 야구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염인섭



로케츠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게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여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염인섭입니다. 로스쿨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도 마무리 되고 가장 중요한 3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에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힘이 되는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추억도 많았습니다. 2년간 저의 로스쿨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야구동아리 로케츠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로케츠(Lawckets) 소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리로서 야구를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2011년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명은 법의 Law에 Rocket을 합성하여 만들었고 1대 감독 이동연 선배님 이후 7대 감독인 저까지 7년의 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케츠의 주요 활동은 충남대학교 교내 리그 참가와 로스쿨 전국대회 출전 그리고 다양한 선배님들과의 교류 활동 등입니다.

우선 충남대학교 야구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리그는 충남대학교 내 다양한 학부팀, 교직원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케츠도 창단 당시부터 꾸준히 충남대학교 로스쿨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7승 3패로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여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경기에 출전하여 야구를 즐기는 의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학부 구성원과 소통하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교류하는

의미도 있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행사로 매년 여름 전국 로스쿨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강원도 횡성군에서 전국 14개 로스쿨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전통의 강자였던 연세대가 예선 탈락하는 이번이 일어난 가운데 로케츠는 예선에서 승승장구 하였으나, 재작년에 8강에서 승리했던 서울대팀을 만나 아쉽게 패하여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팀들이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기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성적과 상관없이 대회 기간 30여 명이 가까운 팀원들과 또 전국에 있는 로스쿨 원우들과 야구를 통해서 교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로케츠의 장점 중의 하나는 오랜 동아리 역사에 걸맞게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무척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평소 리그경기에도 꾸준히 참여해 주실 뿐 아니라 청백전과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재학생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로스쿨 생활과 변신 준비 나아가 법조계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셔서 재학생들에게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 로스쿨 생활과 운동 동아리 활동

3년의 로스쿨 기간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실력을 갖추기에 길지 않은 시간임은 직접 로스쿨에 입학하여 생활해 보니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첫경기 승리를 축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영향으로 학업에 대한 압박이 점차 증가하다 보니 때로는 운동 동아리가 공부에 방해 되는 활동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케츠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게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여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신 선배님들께서 학교 성적에서나 졸업 후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로스쿨은 다양한 나이와 전공, 학부 출신이 모이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개인 주의를 심화되기 쉽고 일체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운동 동아리는 각 로스쿨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학교와 팀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생겨 외롭지 않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케츠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동아리 구성원의 친목이 두터워 타 동아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 야구의 매력과 로스쿨 생활

야구는 진입 장벽이 있는 운동이어서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에 대한 이해와 숙달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초심자라면 평균적으로 한 학기 정도의 꾸준한 연습량이 있어야 비로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경험이 없는 분들은 시작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에 비례하여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성취감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야구의 또 다른 매력은 팀스포츠이면서 지극히 개인 스포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타석에서나 수비에서 플레이 하는 순간에는 경기장 내외의 모든 시선이 플레이어에게 집중 되고 팀기록은 물론 개인기록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남는 기록의



리그 경기 중

경기 중 휴식을 취하며

경기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점이 로스쿨 생활이나 향후 법조인의 역할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개인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편으로 팀플레이어로서 소속된 학교나 법조직역 나아가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항상 의식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스쿨 생활이 전적으로 공부만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학업에 본분이 있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선후배, 동기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한 팀으로서 3년을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성적과 경쟁에 매몰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동기나 선후배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한 팀으로서의 소속감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성과가 있으면 개인의 영광이 되는 동시에 학교나 동료들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팀원으

로서 동료의 실수가 있으면 나머지 팀원이 보완해 주기도 하면서, 함께 하는 3년의 시간을 통해 훌륭한 동료들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마치며

감독으로서의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올해로 벌써 3학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한편 열심히 달려온 2년의 시간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팀은 차기 감독과 후배들에게 맞기고 본분인 학업에 좀 더 충실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한 로케츠 7기 선배님들 모두의 변신에서의 건승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법이라는 이름에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강금아



**이름만으로도 무거운 법이라는 이름을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수동적인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법의 영역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 1. 들어가며

학부 교육과정을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공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라고 답하면 돌아올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하시네요!”

최근 종영한 KBS2 <마녀의 법정>에서부터 tvN <비밀의 숲>, SBS <이판사판> 등 법조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넘쳐나고, 유명 변호사가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등 법조계 또는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법은 여전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 2. ‘법 없이도 살 사람’의 역설

‘법’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꽤나 차갑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주로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다툼의 끝을 붙잡고 나오는 말이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속에 갇혀 사는 사람에 대비하여 티 없이 올곧은 사람을 좋게 이르는 말이지요. 법을 대화의 주제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다소 인간미 없고 냉철하고, 소위 ‘정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법이 가진 어려움과 능숙한 중재자의 부재 탓일 것입니다. 2년 전, 비법학사로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 제가 겪은 어려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법전 속 용어의 어려움은 이해의 어려움을 낳고, 이해의 어려움은 법학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휩쓸려 절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은 우리의 일상에 능동적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저 먼 곳에 밀려나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뒤적이게 되는, 이른바 ‘수동적 법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은 더욱 어렵습니다. 능동태를 배울 때보다 수동태를 배울 때 한 번 더 거쳐서 생각해야하는 어려움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법 없이도 살 사람’보다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법은 ‘정’을 무기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 3. 훌륭한 법조인 대신 능숙한 중재자가 되는 것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조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법학이 가진 어려운 외관을 벗겨내고,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내어 의뢰인의 불안을 다독이고 당사자 간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 그 사이에서 의뢰인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법대로 하자는 말이 더는 부정적이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의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선, 다양한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수험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책이지만, 가장 많이 지나치는 것 또한 책입니다. 전자는 법학 수험서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책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법전이라도 한 자 더 외워야지.”라는 말 속에 외면되는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언어의 폭을 확장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법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말과 법의 언어를 접목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책은 삶이 여유로울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여유롭기 위해 읽는 것이기에 수험법학에 매몰되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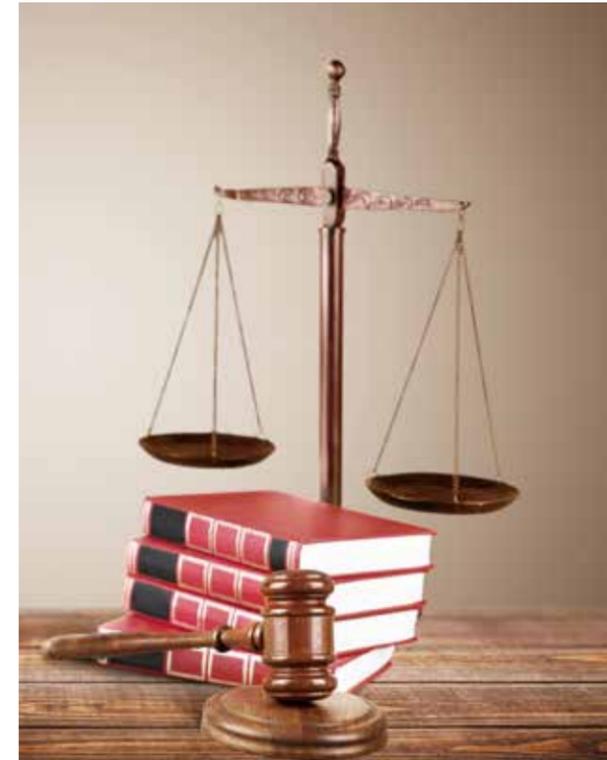
## 다음으로, 관계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개인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여 타인을 접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느냐는 법조인에게는 그 어떤 역량보다도 중요시될 것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아 그 종착역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건의 의뢰인, 증인, 소송의 상대방, 상대방의 변호사 또는 검사에서부터 판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을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고 때론 치열하게 다투가며 사건을 해결해갈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 사건 해결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 무거운 것을 가볍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 더 이상 전문가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해당 분야를 정확히 잘 아는 데에서 나아가 그것을 쉬운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를 사건의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이에게 어떠한 의문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을 친숙하게 전달하는 것, 법이 무거운 사람들로부터 그 무게를 덜어주는 것,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이슈를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자 마음먹고 조언을 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법률전



문의의 역할일 것입니다. 즉, 능숙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 4. 마치며

이름만으로도 무거운 법이라는 이름을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수동적인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법의 영역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더는 전법률적인 관점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법과 사회, 그리고 사람을 잇는 법조인의 역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법학에 대한 관점을 구축해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역시 이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현재 나의 책의 무게는 미래 나의 의뢰인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되뇌어봅니다. [창](#)

지난해 말,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후 군법무관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이들이 군법무관으로서 국가안정을 보장하고,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다.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는 개최된 첫 해인만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ditor. 박소희

#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1. 목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군형사법 분야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 참가자격 및 팀의 구성

로스쿨 재학생(휴학생 포함)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할 수 있고 다만 팀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3. 경연 방식



### 예 선

#### 가. 서면의 제출

참가 팀은 참가신청절차 종료 후 경연대회를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에 대한 군검사의견서, 피고인측 변론요지서를 쌍방의 지위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본대회 진출팀 선발

서면심사 결과 상위 12개 팀 이내를 본대회 진출 팀으로 선정한다.

### 본 대회 (법정경연)

#### 가. 경연 시간

경연은 35분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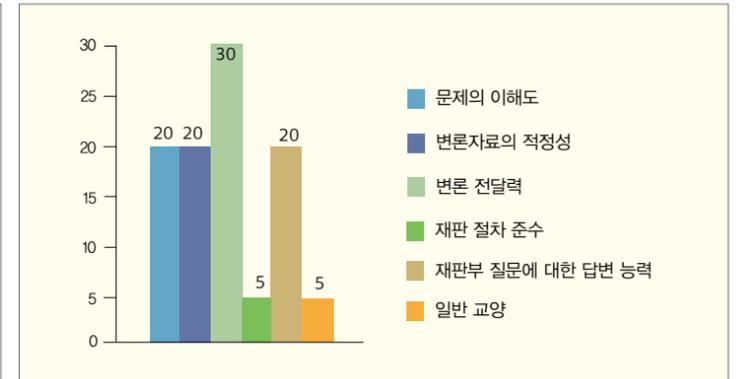
#### 나. 경연 방법

변론은 주 변론 → 재판부 질의·응답 →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한다.  
주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한 사람이 3분 이상 하여야 하며, 2명이 나누어 변론하여야 한다.  
재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분의 범위 내에서 팀원 누구나 할 수 있다.

※ 경연 팀은 법정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 옷, 책자, 파일,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법정에 있는 방청인에게도 적용된다.



## 4. 평가 항목당 배점 비율



단위: %

## 5. 시상

구분	선발팀	시상내역	제1회 수상팀
국방부장관상	1팀	상금 200만원	충남대(김술·김준영·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장상	각 1팀	각 상금 100만원	전남대(노유진·이종현·김정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서울대(임동민·이준규·김종훈)
육군참모총장상			서울대(원현호·김휘재·박윤민)
해군참모총장상			전북대(서정민·김다윗·박두리)
공군참모총장상			연세대(임철갑·한선민·김예림)

※ 이 외에 고등군사법원장상은 지아이제인팀, 공중급유기팀, 용상상가팀, 으뜸과 버금팀, 고수바이하수팀, 욱기독기팀이 수상했다.

※ 교육부장관상(최우수 변론상)은 삼성팀의 김정무 학생이 수상했다.

##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팀 충남대학교 로스쿨 '악티오'

- 김솔, 김진우, 김진영 -



### Q. 수상 소감은 어떠한가? '1회', '대상'이어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아직까지도 얼떨떨합니다. 마지막 조여서 다른 팀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대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서 대상만 앞두고 모든 팀이 불렸을 때 비수상권인줄 알고 아쉽다고 생각했다가 대상에 호명되어 부끄럽게도 소리를 지르고 시상 받으러 나왔습니다(웃음). 1회 대회 홍보물을 보고 군사법이라는 법분야에 대해 배워보고 서면작성법이나 실제 변론과정 등을 두루두루 겪어보자고 나가게 된 대회였는데 값진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오랜만에 본가에 가있던

시간에 열심히 의견을 나누고 준비했는데,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물이 가지적으로 주어지니 자못 뿌듯합니다. 시상에 앞서 심사위원장께서 이겼다고 거만하게 살고 수상권에 못 들었다고 철저히 열등 의식에 빠져서 살면 인생 망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야 할 일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 Q. 팀원 소개를 해 달라. 팀명에 담긴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가?

▶ 9기 김솔(팀장), 8기 김진우(팀원1), 9기 김진영(팀원2)입니다. 팀명 악티오Actio는 라틴어로 소권이라는 뜻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고 나서 배우게 된 개념입니다. 모든 법률관계에 소권을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악티오를 팀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Q.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팀원 구성은 어떻게 한 것인가? 팀원들 모두 평소에 군사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관심이 많았나?

▶ 학교에 홍보물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이 가장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두루 경험을 쌓고 싶어 대회에 나가고 싶었고, 유능한 팀원들을 쫓아다니며 같이 나가자고 즐겼습니다. 법학도로서 법적 쟁점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일환에서 군사법 관련 이슈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 Q. 제1회 경연대회의 문제는 '군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서면 심사는 어떻게 준비했으며, 군검사의 의견서와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없었나?

▶ 서면을 서식에 맞춰 쓰는 것도 평가요소였는데, 규칙에서 교수님들께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에 서면을 쓸 줄 아는 선배를 팀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팀을 꾸리고 난 뒤에는 쟁점별로 큰 틀을 같이 짠 뒤 내용을 분담해 각자 쓰고, 드래프트를 서로 돌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나갔습니다. 서면과 관련해 작성법이나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학생으로서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양측의 의견을 준비하다보니 서로 논박하여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던 반면,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 Q. 군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 중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했나?

▶ 구조상 군검사의견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를 주장하면 되므로 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편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될만하다고도 느껴지는 의견을 밀고나가면서 그 관련 의문 쟁점을 변호인측 의견에서 예상되는 반론으로 써냈습니다.

### Q. 서면심사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이었나?

▶ 우선 형식적인 면도 평가요소이므로 작성법 등 서식에 익숙한 사람을 팀원으로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기초적인 법리를 파악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 있어서는 위력행사가혹행위나 군용물을 제외하고는 면밀히 군사법과만 관련된 요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판례 등을 참조하며 관련 법리를 파악해두었습니다. 그 이외 일반 형법 쟁점은 학교 수업을 통해 내용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 직전에 담당 법무관께서 판례에 따른 답변을 말씀해주셨는데, 미리 다 논의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회이다보니 주어진 요소별로 득점포인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용적으로 주효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예컨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과 관련해 위법성조각사유 대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논리를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더 유리한 변론을 폈습니다.

### Q.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본대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나?

▶ 이미 서면이 재판부와 상대팀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간 내에 명료하게 핵심을 말하기 위해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또한 구두변론이다보니 주의를 끌만한 중요요소를 명확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에 맞춰서 간추린 대본과 시간이 남을 경우 및 상대팀의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목소리를 터는 것까진 대비를 못해서 당일날 무척 떨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웃음). 규칙상으로는 59초 시간초과까지는 감점이 없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현장분위기에 따라 시간에 딱 맞춰 끝냈습니다.

###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 군사재판 특성상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생소한 군사법 관련 법리를 파악하기 위해 판례자료가 필요했는데 판례에 대해 접근 자체가 다소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에 뉴스기사가 큰 틀을 잡는데 더 편했을 정도로 판례 검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판례 검색이 용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Q. 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

▶ 학교를 다니며 참고서 구입 등 각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2회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 군사법 관련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고 서면작성 뿐만 아니라 변론까지 재판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치밀하게 읽고(그래서 팀구성 3명을 추천합니다),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은(예를 들어 문제에서의 "찢어진 셔츠") 다 챙기시는 게 주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 삭발식, 총궐기대회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 집행부 및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세무사법 개정안(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기존 제도 폐지)은 2016년 10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6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으며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2017년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례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여간 머물러있던 법안이며, 기재위에서 선진화법에 따른 안전 처리를 요청해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업무 범위가 축소되고 국민들에게서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앗아가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임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특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미 다양한 전공,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로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20일 국회의장,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상정 시사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정례회동을 열었다.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2017-11-20)

## 11월 21일 대한변협 임직원 및 회원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시사한 이튿날인 11월 21일, 대한변협시협회는 김현 회장을 필두로 집행부 33인 전원이 이틀에 걸쳐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출처: 대한변협시협회

## 11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한변협시협회 공동성명서 발표

11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그리고 대한변협시협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서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세무사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47페이지 참고)



## 11월 23일 대한변협시협회 궐기대회 개최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만 세무 대리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법률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출처: 뉴스1(2017-11-23)

## 11월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변협 의견 전달

김현 대한변협시협회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은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장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에 대한 변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출처: 뉴스1(2017-11-28)

## 12월 8일 대한변협 임원진, 삭발식 진행

국회 본회의의 개의 전인 12월 8일 오전,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세무사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2017-12-08)



사진출처: 연합뉴스(2017-12-08)

##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 12월 22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총결기대회 개최

지난 12월 22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는 개정 세무사법을 규탄하는 총결기대회가 개최됐다. 대한변협은 12월 22일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의 회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총결기대회에는 1,000여명의 대한변협 임직원과 회원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여해 개정 세무사법 반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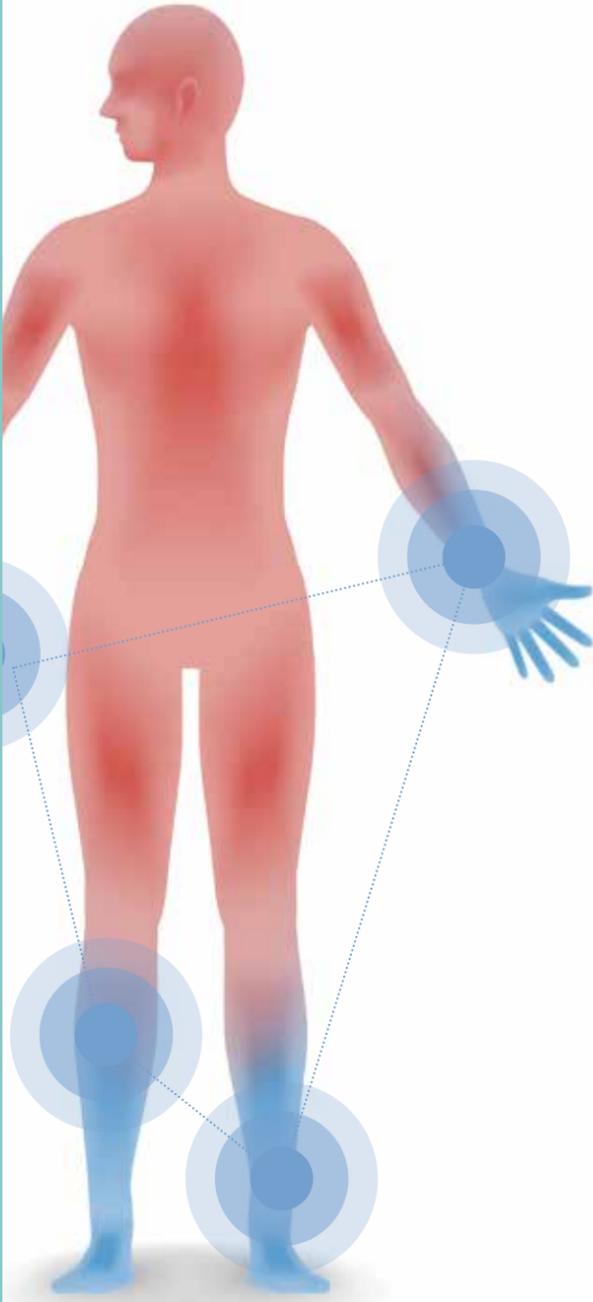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보도자료 2017.11.21.자

## 세무사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2016년 10월 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1)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당연히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
- (2) 이익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입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
  -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은 과거에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수가 적었던 시대에 부족한 법조 인력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 세무사 제도 역시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서 파생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부여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
  -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이다.
- (3)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 단체의 기득권만을 옹호해 주고 국민이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수족 냉증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저는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겨울이라 집에만 있었더니 몸무게가 불어 혈당이 올라간 것 같다는 환자분 말씀에 겨울에도 재미있는 활동과 놀이들이 많으니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는 권고에 대한 답이었다. 자세히 물어보니, ‘수족 냉증’이라는 말과 함께 추워지면 특히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데,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뚝 떨어져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족 냉증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손발에 유난히 차가움을 많이 느낄 때 흔히 붙이는 진단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특히 많이 호소하는데, 동맥경화 등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온 것으로 생각하여 혈액순환개선제로 불리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처방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처방만으로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수족 냉증, 즉 손과 발이 차갑다는 증상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다.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는 그 원인이 중풍인지 스트레스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처럼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그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반응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손과 발부터 열손실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덜 중요한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중요한 심부체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추운환경에서 조난당했을 경우는 이런 기전이 빨리 작동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이분들은 손과 발의 동상은 더 빨리 올 것이다) 만약 수족냉증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정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끈질긴 생명력에 자부심을 가

지고, 손발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수족냉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는 특이한 질병의 한 증상으로 발생할 경우이다. 레이노병과 같은 혈관성질환을 포함해서 류마티스성 질환, 신경성 질환,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 질환, 약의 부작용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레이노 현상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발이 하얗게 변하면서 차가워지고 지속되면 통증까지 느끼게 되고 동상이나 궤양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처음에는 손이 하얗게 되고 파랗게 변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다시 따뜻한 곳에 나오면 혈관의 확장 작용에 의하여 손가락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손발에 동반된다. 젊은 나이에도 많고, 가족 중에 비슷한 문제를 가진 경우도 20% ~ 30%에서 발견된다. 혈관확장제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아직 좋은 치료법이 없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류마티스성 질환의 경우 얼굴의 홍조나 광과민증, 사지의 다발성 관절염 및 심할 경우 관절의 변형,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으로는 추간판탈출증, 말초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이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나 말초신경염의 경우 저리거나 이상한 감각이 동반되면서 통증의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집안 일을 많이 하는 주부나 임신과 연관되어서 손목 이하로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의 저린 증상과 진행될 경우 근육의 약화로 힘이 저하되는 증상을 동반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손목터널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어 더불어 수족냉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혈압약이나 항암제 등의 경우도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므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증상들이 대체로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먼저 발견하고 조절하게 되며, 근본적인 원인이 조절되면 수족 냉증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설명한대로 질병이라기보다는 추운환경에 대해 생존하기 위한 정상적인 (또는 약간 과장된)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 특발성 수족냉증의 주요 기전으로는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이나 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공급이 줄어 냉기를 느끼는 것이다. 기분 좋지 못한 냉기를 느끼게 함으로서 빨리 추운환경에서 벗어나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약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출산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 등이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지면 평상시와 달리 더 악화되는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수족 냉증은 추위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의 치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차가울 때 신경반사에 의해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는 빨래나 설거지 등 차가운 물에 손이나 발을 노출하는 일이 많은데, 따뜻한 물을 사용하거나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족 냉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데, 대표적인 것이 흡연과 손발이 딱 조이는 의류 등이다.

운동과 같이 혈관과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수족 냉증의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법으로 매우 좋다. 가벼운 운동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반신욕, 족욕 등은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력운동이나 심폐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자연스럽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최근 유행하는 여러 보온 장치들을 이용하여 적절한 보온이 가능하다면 겨울 스포츠를 조금씩 즐겨보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생활과학의 발달은 두껍거나 무겁지 않으면서도 보온기능이 탁월한 옷감 소재나 발열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신의 용도에 맞는 적절한 기구를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면 과거와는 달리 겨울에 굳이 따뜻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아도 봄, 가을보다 더 재미나게 건강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50년간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변호사가 전하는 '운의 진정한 이치'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왔다. 상속 혹은 이혼 문제로 재판의 힘을 빌리려는 사람, 교활한 방법으로 법망의 틈새를 노려 성공한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좋은 일로 상담을 청해오는 사람



등 그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다양했다. 저자는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첨예한 상황을 지켜보고 관여하는 사이 '운(運)'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의 그 후 이야기 속에서 '운의 진정한 이치'를 깨달았다. 운을 과학적 혹은 법률적 근거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상의 죄가 아닌 도덕적 과실이 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니시나카 변호사가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50년 변호사 생활 속에 1만 명의 의뢰인을 만난 노구가 그들의 인생을 분석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인생은 운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니시나카 쓰토무 일본 변호사가 지은 책 <운을 읽는 변호사>는 제목부터 상당한 의아함을 자아냈다. 변호사가 법전과 판례를 읽고 의뢰인의 인생을 읽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왜 운을 읽는다는 말인가. 저자가 책속에 인용한 성현의 옛말이 해답을 주었다. 모사재인(謨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 불가강야(不可強也)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삼국지의 실질적 주인공 제갈량은 북벌을 단행해 호로곡에서 사마의를 상대로 화공을 펼쳐 궁지에 몰았지만 소나기가 내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소나기로 인해 실패했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라고 탄식했다. 저자는 삼국지의 사례처럼 일의 결과는 운에 따라 작용되는데 운은 하늘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므로 하루하루 운을 좋게 하는 행동을 쌓고 덕을 베풀면 좋은 운이 따라온다고 말한다. 즉, 저자가 말하는 운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한다.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 등이 사람의 운명을 움직인다는 의미다.

당시 저자는 변호사 업무 자체에만 충실했을 뿐 인간을 한 영혼으로서 대하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실수는 비록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덕적 과실의 영역에서 비난받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타인의 잘못을 몰아붙여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3가지 사례를 들며 변호사로서 활동하더라도 관용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저자가 초임변호사 시절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채무자에게 채권지급을 독촉하였을 때 채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한다. 경험이 미숙했던 그는 채무자에게 엄격한 태도로 전화나 서면으로 상대의 약속 위반을 질책했고 마지막 전화 후 채무자는 자살하고 말았다. 유서에는 '니시나카 변호사에게 유예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 경험은 재판의 증인에게 모순되는 증언을 엄격하게 추궁했더니 추궁 당하던 증인은 재판도중 쓰러져 법원에 후송된 후 며칠이 지나 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마지막 경험은 의뢰인의 딸의 이혼문제 상담을 해주기 위해 의뢰인의 자택에 간 저자가 저녁을 먹고 가라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였는데, '변호사에게까지 차별을 받았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일이다. 저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소개하면서 변호사는 법률가이기 전에 의뢰인 혹은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저자 니시나카 쓰토무(西中務)는 194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오사카대학 법학부 졸업 후, 5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민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큰 명성을 얻은 그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더불어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매년 손글씨로 쓴 2만 장이 넘는 편지와 연하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다. 현재 에토스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생명의 전화' 상담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을 경험 속에 얻었다는 체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저자는 변호사 업무 자체에만 충실했을 뿐 인간을 한 영혼으로서 대하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실수는 비록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덕적 과실의 영역에서 비난받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학자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도덕과학은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르는 존재라고 해석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며 매일 이용하는 철도도 건설 노동자의 희생의 산물이듯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편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특별히 저자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생활고를 겪는 일본의 변호사 업계에서도 친절하고 정중한 변호사는 성공한 사례를 전해준다.

니시나카 변호사는 자신이 두 군데 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것도 도덕적 과실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오사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합격한 또 다른 대학교의 다른 응시자가 자신 때문에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도덕적 과실의 측면에서 소송 가운데 상속분쟁은 큰 불운의 서막이라고 말한다. 가족 간에 분쟁이 계속 이어져 불운이 온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혼 소송은 최대한 만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불운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고,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불운이 닥쳐올 수 있다고 말한다. 다툼에서 진 상대가 원한을 사서 일을 방해하거나 그가 죽어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재판에 이긴 사람을 호시탐탐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아뎀사,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니시나카 변호사님 왜 그럼 변호사가 되셨나요?" 저자가 답한다. "변호사는 이혼이든 부도처리든 유산상속이든 다툼이 일어 재판을 하는 것이 더욱 큰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웁니다. 사법연수원 교관들은 분쟁처리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승소 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 어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고 고백한다. 또한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말한다. 천재적인 재능보다 훌륭한 성품이 더 귀하다는 가르침을 하며 감동적인 한 예화를 알려줬다.

오사카의 고무호스 브랜드 중 으뜸회사에 근무하는 도가와씨는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고무제품을 제작하는 작은 고무가게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여 주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사장이 술을 좋아해 경영을 소홀히 한 틈에 가게는 도산되어 모든 직원이 떠나버렸다. 그러나 도가와 직원은 홀로 남아 가게를 지켰고 압류된 사장의 가재도구를 자신이 모은 저축금으로 사서 사장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그는 독립하였고 그의 인품에 반한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와 순식간에 회사가 발전했다. 그가 회사의 공장장으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도산한 옛 가게의 사장이었다. 옛 가게 사장이 죽은 후 도가와와는 그의 유족들도 돌보았다. '왜 그렇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도가와씨는 '제 은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저자는 은혜를 잊지 않는 훌륭한 품성이 인간이 가진 재능보다 삶의 더 큰 미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처음에는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는 성공하며,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이라고 전한다.

특별히 저자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생활고를 겪는 일본의 변호사 업계에서도 친절하고 정중한 변호사가 성공하는 사례를 전해준다. 저자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는 몹시 예의 바른 사람이라 의뢰인은 물론 상대측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를 썼다. 의뢰인이 볼 때 상대방에게 너무 친절한 말투로 대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저자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채무자가 무시할 것이라며 주의를 주었지만 잠시 고치는 듯 하더니 다시 예전처럼 정중하게 대하였다고 한다. 4년 후 독립한 젊은 변호사가 과잉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 사무실이 잘되고 있는가 물어보니 걱정해주신 덕분에 순조롭다는 의외에 답을 들었다. 그에게 의뢰인 상대측의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는 설명이었다.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만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분명 성공가도를 걷게 된다고 한다. 옐로우햇의 창업주 가기야마 히데사부로씨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식품을 살 때면 늘 유통기한을 보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일부러 샀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가게는 그 식품을 폐기처리 해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은 아깝고, 슈퍼마켓은 손해를 봅니다. 내가 그것을 사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기야마씨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본 것이다. 더 확장해 생각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려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익이 줄어 자사 상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물건에 사야한다. 가기야마씨는 이점을 이해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결국 자신에게 나쁜 운을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인생의 성패가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생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 그 운은 자신이 만든 인생관, 인간관계, 도덕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책을 읽으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5년간의 짧은 변호사 경력 중 나 역시도 의뢰인 3명의 죽음을 보았다. 경매와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에 의한 충격을 이기지 못한 이들도 있다. 일생에 재판을 단 한번이라도 치를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게 될 때 갖게 되는 정신적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저자의 말대로 운을 좋게 하는 변호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지면을 덮고 있는 각종 재판소식을 들여다보면 사실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장면이 많다. 사법부는 자기 살을 깎듯 최고의 엘리트 의식을 가진 직업군에 속한 판, 검사들에게 도덕적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사법고시의 교육이 법적인 과실에만 집중되어 시험의 승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탓에 도덕적 과실의 문제를 등한시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로스쿨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한 인성'을 갖춘 인격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의 가르침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과잉경쟁의 법조시장에서도 격량의 파고를 넘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창**

연극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흔히 배우, 무대, 희곡 그리고 관객을 꼽는다. 관객이 단순한 구경꾼에서 연극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대와 객석의 호흡이 공연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관객 없는 공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2018년에도 공연을 구성하는 한명의 관객으로서 알찬 관람을 시작해보자!



## 신이여,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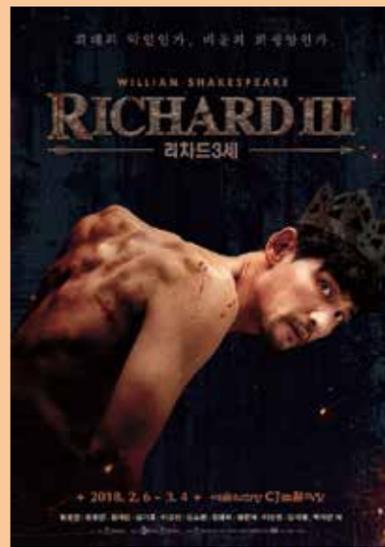
전 세계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이자 고전문학인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당대의 작가들에게 완전무결한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극,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현되며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국내 초연을 앞두고 탄탄한 원작과 화려한 캐스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이자 대표 공연 연출가로 활약하고 있는 박칼린이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초연에 협력연출이자 음악 수퍼바이저로 참여해 한국어 버전의 성공에 힘을 실을 예정으로, '안나' 역에는 옥주현과 정선아가, '안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브론스키' 역에는 이지훈과 민우혁이 캐스팅됐다. 이외에도 서범석, 최수형, 기세중, 이지혜, 강지혜, 지혜근, 이창용, 박승권, 박유겸, 이소유(이정화), 손종범 등 한국 뮤지컬계 대표 배우들이 출연한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기간 2018.01.10.(수) ~ 2018.02.25.(일)  
티켓가격 R석\_14만원, OP석\_13만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 Musical

## 희대의 악인인가, 비운의 희생양인가 연극 **리처드3세**

연극 <리처드3세>는 15세기 장미전쟁시대를 배경으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와 어린 조카를 살해하고 왕가의 여인들을 농락한 리처드 3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는 불품없이 못생긴 얼굴과 움츠러든 왼팔, 곱사 등을 가진 신체적 불구자지만 모든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뛰어난 언변과 권모술수, 유머감각,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쟁구도의 친족들과 가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의 중심에 선다. <리처드3세>는 배우 황정민이 10년 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하면서 망설임 없이 선택한 복귀작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창극을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출을 선보인 서재형이 연출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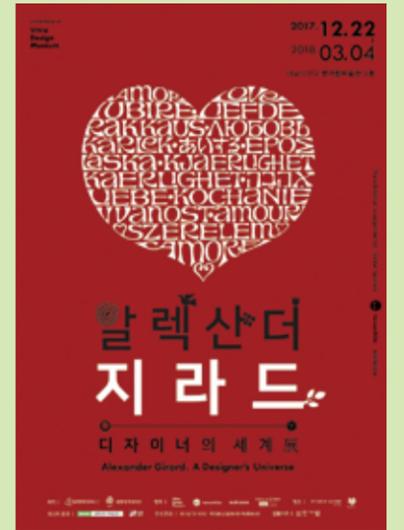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공연기간 2018.02.06.(화) ~ 2018.03.04.(일)  
티켓가격 R석\_8만 8천원, OP석\_7만 7천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 Play-acting

## 20세기 디자인사(史)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 알렉산드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 展

알렉산드 지라드(1907-1993)는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당시의 인테리어, 건축, 가구, 소품, 텍스타일 등 폭넓은 디자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상업 디자이너이다. 지라드는 1952년 허만 밀러(Herman Miller)사의 텍스타일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하며 이 기간 동안 허만 밀러의 대표 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1973년까지 300점 이상의 텍스타일과 월페이퍼를 디자인했다. 국내에 베어브릭과 목각인형 컬렉션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알렉산드 지라드의 디자인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의 많은 인테리어 디자인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대를 아울러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시는 그의 삶과 업적을 아우르는 707점의 작품을 총 4부로 구성됐다.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시기간 2017.11.22.(수) ~ 2018.03.04.(일)  
티켓가격 성인\_1만 3천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 Exhibition



## 빛·컬러·판타지 PLASTIC FANTASTIC

디뮤지엄(D MUSEUM)은 오는 3월 4일(일)까지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감성과 플라스틱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나 탄생한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 <PLASTIC FANTASTIC: 빛·컬러·판타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불리는 플라스틱이 일상으로 들어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채롭게 변화시킨 마법 같은 여정을 보여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열정 넘치는 40여 명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이 개성과 도전정신을 불어 넣어 탄생시킨 2,700여 점의 제품, 가구, 조명, 그래픽, 사진 등이 총망라된다. 방대한 아카이브에서 엄정한 광고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 작품 등을 통해 이탈리아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과감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장소 디뮤지엄  
전시기간 2017.9.14.(목) ~ 2018.03.04.(일)  
티켓가격 성인\_8천원  
홈페이지 [www.daelimmuseum.org/](http://www.daelimmuseum.org/)

# LAWSCHOOL NEWS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7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연수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법무연수원 측에서는 법무연수원 김오수 원장 외 기획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외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상호간의 강의계획, 로스쿨 소재지 관할 검찰청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방안, 파견 검사 적극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제39차 이사회 & 제42차 총회 개최

12월 8일(금)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9차 이사회 및 제42차 총회가 개최됐다. 이형규 이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감사 등 총 2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차 보고와 함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42차 총회에서는 2018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기본계획과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12월 8일(금)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가 열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모의법정, 1인 열람실, 강의실 등을 돌아보는 교내 시설 투어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단 방문 행사는 25개교 원장단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행사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MOU 체결

지난 12월 11일(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현 이사장, 김정선 서울중앙지부장, 이돈영 정책경영기획단장,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윤인섭 정책정보관이 참석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정형근 원장(경희대), 원혜욱 원장(인하대), 정병호 원장(서울시립대), 김명기 국장(협의회)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공익기획소송 등 법률구조의 공동수행, 법률구조 등 공익활동 공동 연구 및 수행,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수습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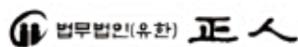
# LAWSCHOOL NEWS



## 2018년도 제2차·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지난 12월 6일(수), 7일(목), 11일(월), 13일(수), 14일(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소문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2018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영역회의가 개최됐다. 영역별(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과목)위원장을 비롯해, 영역별 출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시험의 출제 방향 및 출제위원별 출제범위 및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 영역회의 이후 개별 출제위원은 분담된 문항을 제작하는 사전 출제를 진행하게 된다.

## 법무법인(유한) 정인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인턴) 채용 공고



- 연수대상 :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 연수기간 : 6개월간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 2018.1.19.(금)
- 제출처 : savior41@gmail.com
- 문의처 : 051-911-6161

※ 연수(인턴) 대상자 채용은 6개월의 연수(인턴) 과정에 한하며, 연수(인턴)기간 경과 후 정식 채용절차가 아님.

## 2018년 제15회 ASLI 국제학술대회 개최 LAW INTO THE FUTURE: Perspectives from Asia



- 일시 : 2018.5.10.(목)~11.(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 마감 : 2018.3.20.(화)
  - 기조강연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순일 대법관, 강일원 헌법재판관
- ASLI(Asian Law Institute)는 아시아 법학의 발전 및 법학자간 토론과 교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아시아 주요 로스쿨이 힘을 합쳐 2003년에 설립되었다. ASLI는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아시아 10개국 주요 10개 법학교육기관을 포함, 전 세계 30여개 법대에서 참가하는 법학분야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인 연례 시그니처 컨퍼런스(Annual Signature Conference)를 열고 있다. 2018년 컨퍼런스에서는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의 미래 모습에 대해 아시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번 15회 대회는 ASLI의 시그니처 컨퍼런스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시험일시 : 2018. 8. 4.(토)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 시험과목 : 법조윤리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원서접수 : 2018. 6. 29.(금) 09:00 ~ 7. 4.(수) 24:00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 또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http://www.moj.go.kr/lawyer))
  - 응시수수료 : 50,000원
  - 발표일시 : 2018. 9. 19.(수)
- ※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http://www.moj.go.kr/lawyer))에 2018.7.20.(금)에 공고될 예정임.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략형

### 1.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의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수형자가 자신의 민사재판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의 차량운행비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는 포함되나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 실제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계엄지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 2.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그 항소포기는 유효하지 않다.
- ㉡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한 다음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는 유효하지 않다.
-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 ㉤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그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⑤ ㉡, ㉢

### 3.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丙과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② 丙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③ 甲이 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④ 연대보증계약 성립 후 甲과 乙의 합의로 丙의 관여 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예정된 경우, 丙은 그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乙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 ⑤ 乙의 甲에 대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乙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그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군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